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18. . .	
연월일	(제 회)	

고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재무과장)
제출 연월일	2018. . .

법무규제개혁담당 심사필

고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8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개정이유

법제처 협업과제 및 규제개선 과제 준비에 따른 상위법 제·개정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불용품 매각 관련 법령 수정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

(안 제17조제4항제5항)

- 불용품 매각 관련법령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시행령 제78조제4항으로 수정하고
- 불용품 매각 감정평가지 감정평가 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

3. 개정조례안 : 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가. 관계법규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」

나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

다. 예산관련 : 해당없음

라. 성별영향 분석 결과 :

마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

조례 제 호

고령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(불용품의 매각) 제4항 중 “매물품당”을 “물품당”으로 하고, “영 제 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(이하 “감정기관”이라 한다) ”를 “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” 로 한다.

제17조 (불용품의 매각) 제5항 중 “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”를 “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서”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불용품의 매각) ① ~ ③ 생략</p> <p>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<u>매물품당</u>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 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<u>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(이하 “감정기관”이라 한다)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<u>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</u>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.</p>	<p>제17조(불용품의 매각) ① ~ ③ 생략</p> <p>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<u>물품 당</u>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<u>재</u>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<u>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<u>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서</u>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.</p>